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8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김용판 · 이주환
이 영 · 김승수 · 양금희
이명수 · 지성호 · 이철규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또한,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,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% 감소(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)하였으나,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·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.

이에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중 “고속버스, 전세버스”를 “고속버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7호가목
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~ 6. (생략) 7. 여객운송 용역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항공기, <u>고속버스</u> , 전세버스, 택시, 특수자동차, 특종선박(特種船舶)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. (생략) 8. ~ 20. (생략) ② (생략)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. 가. ----- <u>고속버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나. (현행과 같음) 8. ~ 2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